

영국사례

입증자료 없이 상대방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확성 원칙을 위반한 보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행한 위장 취재는 인정될 수 있다.

- 불만제기인: Mr Paul Smith
- 적용된 조항: 제1조(정확성), 제3조(사생활), 제10조(위장취재)
- 언론사: Hull Daily Mail

청구내용

Paul Smith는 2010년 3월 4일 「Hull Daily Mail」이 게재한 “시 웹사이트 제작자의 포르노 사업”, “이 사람 뒤에 감춰진 역겨운 포르노의 실체”, “시 웹사이트: 그 추악한 진실” 각 제하의 기사가 부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해의 여지가 많아 실천 강령 제1조(정확성)를 위반했다며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에 불만을 제기했다. 해당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다.

해당 기사는 시 의회가 추진 중인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의 제작 책임자인 신청인이 이전에 수천 개에 달하는 포르노 사이트를 설계한 바 있고(기사에서는 그가 디자인한 사이트가 총 3,991개에 이른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다), 4,000여 개에 이르는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청인은 사실관계가 부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즉, 여러 분야에 걸쳐 약 100여 개의 사이트를 제작했는데 그 중 일부가 성인사이

트였을 뿐이고, 소유하고 있는 도메인도 100여 개이며 그나마 절반 정도는 폐쇄된 상태라는 것이다.

신문사 측의 주장에 따르면, 취재 당시 웹 등록 현황을 검색한 결과, Smiths Media Solutions가 3,991개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대부분이 성인사이트였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서버가 접속이 안 돼 해당 숫자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부분에 대해 신문사는 보도 이전에 신청인을 취재했으나, 당시 신청인이 자신이 관련된 사이트의 숫자를 알려주지 않았고, 의혹을 부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정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한다.

평결

PCC는 신청인이 지역 커뮤니티 웹사이트 제작이라는 책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신문사가 신청인의 사업 활동을 검증하는 것은 합법적인 공적 영역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신문사는 이러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취재를 할 경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신청인이 과거에 포르노사진 사이트를 설계한 전력이 있고, 상당수의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신문사는 신청인이 포르노 사이트를 수천 개 제작했다거나, 4,000개에 달하는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였다. 신청인에게 매우 타격이 클 수 있는 의혹을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입증하거나 PCC에 정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제출된 각 자료에 의거하여 볼 때, 신청인의 성인사이트 관여 정도에 대해 독자들이 오해할 여지가 커, 실천강령 제1조를 위반했음이 명백하다.

한편, 신청인은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

신청인은 웹사이트 제작을 직업으로 삼고 있고, 과거에 성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게임, 재무, 쇼핑몰, 의약품 관련 사이트 등 여러 분야의 사이트를 제작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해당 사이트의 디자인만을 담당했을 뿐임에도 1면 기사 헤드라인은 신청인이 “포르노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고, 기사의 전체 맥락은 마치 신청인이 포르노 사진 콘텐츠를 제작한 것처럼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접대여성인 척하고 접근한 취재 기자에게 자신이 웹사이트를 제작해주겠다고 “동의”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동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논의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사는 시의 커뮤니티 사이트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 이슈들을 광범위하게 담게 될 뿐 아니라, 시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당연히 제작을 담당한 신청인의 활동에 대해 독자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문사는 기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신청인의 반론을 실었고, 신청인의 입장뿐만 아니라 신청인에게 호의적인 지역 사람들의 인터뷰도 함께 실었다고 항변했다. 또 신청인이 포르노 사이트에 어느 정도 연관된 것인지 기사에서 분명히 밝혔고, 해당 사이트가 불법 콘텐츠를 담고 있다는 인상을 준 적도 없으

며, 이 점에 대해 신청인의 해명을 실으려 했으나 신청인 본인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사는 신청인이 접대여성으로 위장한 기자에게 사이트를 만들어주겠다고 동의한 후 150~250파운드를 제시했다고 밝혔으며, 이메일 내용을 입증자료로 제시했다.

PCC는 기사의 제목은 기사 전체 맥락을 살펴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당해 기사는 신청인이 포르노사이트에 관여한 정도를 독자에게 명백하게 제시했다. 즉 합법적인 성인물을 게시하고 있는 사이트를 설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신청인이 사이트의 콘텐츠를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웹페이지의 디자인을 담당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보도상 명백하다. 신문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신청인의 입장 또한 상당 분량 실려 있다. PCC는 접대여성으로 위장한 기자와 사이트 제작에 관해 논의한 점 또한 명백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조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신청인은 이밖에 해당 보도가 사생활을 침해했고, 신문사가 위장취재를 하였으므로 실천강령 제3조(사생활)과 제10조(위장취재)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신청인은 처음 취재할 당시, 기자가 신분을 속이고 접대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웹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가짜 Facebook 계정을 만들어 속였으나, 이러한 취재를 해야만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분을 밝히고 취재 요청을 했더라도 신문사에 협조하여 답변을 했을 것이므로, 굳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신청인은 기사에서 신청인의 배우자와 고용주의 이름, 집 주소 일부가 언급된 것에 대해서도 사생활 침해이며 신청인의 가족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신문사는 시에서 신청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포르노사이트를 제작하고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직업상 활동 사안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사는 또 신청인이 포르노사이트 도메인을 상당수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성인사이트 제작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인지 취재할 필요가 있었고, 신청인이 언론사에 정직한 답변을 해줄 리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자는 접대여성으로 위장한 자신에게 신청인이 웹사이트를 제작해줄 의향이 있음을 파악하고 나서는 바로 신청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고 말했다.

신문사는 공개된 기업정보사이트를 통해 Smiths Media Solutions의 총무부장이 신청인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배우자의 이름과 고용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기사 작성에 필수적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문사는 신청인의 이름이 상당히 흔한 것이기 때문에 기사의 정확성을 위해 신청인의 집 주소 일부를 적시한 것이고, 집 주소가 곧 사업장의 주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기자가 가짜 Facebook 계정을 만들고 신분을 속인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다. 기자는 신청인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실제 신분을 밝혔다.

기자가 위장취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위장취재의 정도가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기자가 가짜 이름

과 홈페이지를 사용한 것은 신청인의 사업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지 신청인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사실도 없다. PCC는 섹스산업과 연관된 사이트를 설계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제작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언론사 주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언론사가 감행한 정도의 위장취재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본다. 그것은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행위였으며, 기자임을 밝히고 취재했다면 접대여성을 위해 웹사이트를 제작하려는 신청인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실천강령 제10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의 주소 일부가 공개되어 신청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신청인 배우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Smiths Media Solutions에서의 직책, 고용관계 등이 보도되었지만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공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천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호주 사례

기사의 내용이 보도의 전제가 되는 내용 중 일부만을 강조하여 전체 취지가 왜곡되었다면 그 기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

평결번호 : No. 1456

호주신문평의회(APC)는 2009년 9월 12일 「The

Fremantle Herald」가 보도한 기사에 대해 Steve Portelli가 제기한 불만을 인용했다. 해당 기사는 Atwell 지역 자치회 Portelli 의장이 공공주택 프로젝

트에 78개의 정부임대주택을 포함시키는 현안에 대해 신문사로 보낸 메일과 이후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언론사에 밝힌 입장에 관한 사안을 주로 다루었다.

해당 기사는 Portelli 의장이 “공공주택 거주자들은 본인들 자신이나 자녀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Portelli 의장은 기자에게 해당 기사가 그가 보낸 메일의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주택 입주자 중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집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게을러서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다.”

Portelli 의장은 신문사가 사과하고 다음 호에 해당 이메일 전문을 게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신문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6주 후, 해당 기사가 자신의 발언을 잘못 인용하여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폄하하였을 뿐 아니라, 마치 신청인이 그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APC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후 신문사는 신청인의 이의 제기에 늦게 대처하

게 된 점을 사과했으나, 신청인의 입장을 잘못 인용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신문사는 인용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반론을 실어줄 의향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청인은 신문사가 사과하고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

신청인의 주장대로 메일 전문을 신고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APC의 질의에 신문사가 입장을 밝힌 것은 거의 4달이 지난 후였으며, 이는 APC가 신문사 및 신청인과 화상회의를 열기로 한 날로부터 이틀 전이었다. 신문사는 Portelli 의장의 해명만을 실어주겠다는 이전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신청인과 전화 인터뷰를 했던 기자의 메모에 의하면 신청인은 통화 중에 거주자들이 게으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APC는 신문사가 Portelli 의장이 처음 신문사에 보낸 메일 내용을 인용함에 있어 균형을 잃은 사실을 기자의 메모가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문사가 신청인의 불만에 신속하게 대처했다면 신청인은 신문사의 사과를 양보하고 해명보도로 만족하는 등 합의점을 도출하기 쉬웠을 것이다.

뉴질랜드 사례 1

기사 헤드라인이 사진 설명 등 다른 부분과 연관되어 독자들로 하여금 사실과 다르게
오해하도록 하였다면 그것은 부정확한 보도라 할 수 있다.

사건번호 : 2114 HEREWORTH SCHOOL AGAINST
HAWKE'S BAY TODAY

교장이 「Hawke's Bay Today」가 보도한 기사의 제목과 사진 설명이 잘못되었다며 제기한 불만을 인용했다. PC 위원 중 2명은 해당 결정에 반대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PC)는 Hereworth School의

배 경

2010년 3월 9일 지역언론사인 「Hawke's Bay Today」는 1면에 “사립학교에서 사이버 왕따가 일어나다”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에 게재된 사진에는 “경고 : Hereworth 학생들이 폭력사이트 가입을 강요하다”라는 설명을 붙였다.

기사의 요지는 Facebook 사이트에서 Havelock North 지역의 사립 남학교인 Hereworth School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홈페이지를 두 개나 만들었다는 것이다. 해당 페이지는 다른 학생에 대한 사이버 집단 따돌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Facebook에 의해 폐쇄된 상태다.

이 기사는 또한 홈페이지에 올라온 유튜브 영상이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으나, 점차 특정 학생을 따돌리기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의하면 누가 이 영상을 만든 것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기사는 후반부에 사이버 왕따 행위에 대한 Hereworth School 측의 입장을 실었는데, 특히 Ross Scrymgeour 교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해당 기사는 인터넷 보안기관인 NetSafe의 관계자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며 학교 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으로 끝을 맺었다.

다른 관련 기사는 이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사이버 왕따를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Scrymgeour 교장은 기사가 게재된 다음날 신문사에 연락하여 헤드라인과 사진 설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신문사는 신청인과의 통화 후,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날 후속 기사를 냈다. 신청인은 후속 기사가 전날 보도된 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다시 요구했으나 신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 측이 전달한 후속기사 내용은 다음날 2면에 실렸으나, 학교 측이 제시한 제목인 “교장, 분노하다”

는 “학교 측, 기사제목에 불만 표시”로 바뀌었고, 내용도 일부 수정되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PC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불만내용

신청인은 신문사가 신속히 대응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대응방식에 불만을 제기했다. 신청인은 이 Facebook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은 현재 Hereworth의 재학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사 제목이 너무 선정적인데다 실제 일어났던 일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고, 문제된 학생들이 현재 Hereworth의 재학생이 아닐뿐더러, 사이트가 만들어질 당시에도 재학생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기사가 잘못 작성되어 독자의 오해를 불러왔고, 결과적으로 기사의 제목으로 인해 실제 사건이 더 크게 부풀려졌으며, 이로 인해 학교의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실천강령 제1조와 제5조, 즉 기사의 정확성, 제목과 캡션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신문사의 답변

Antony Phillips 편집장은 사이버 왕따가 해당 지역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이슈였으며, 해당 기사는 Hereworth의 재학생들이 사이버 왕따의 대상이었고, 재학생들이 Facebook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편집장은 1면의 주 제목은 통상 해당 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자를 사용한다며, 학교 측이 제기한 선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Scrymgeour 교장이나 학교 측이 재학생들이 왕따의 대상이라거나, 해당 사이트 제작에 관여했다는 쟁점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

이 없으며, 보도 다음날 Scrymgeour 교장의 입장을 다루겠다고 약속한 바는 있으나, 전달된 원안을 그대로 신췌다든지, 1면에 실어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동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신문사는 해당 문제를 처음 알렸던 교사로부터 전달된 서면 의견을 보도하여 학교 측의 입장을 밝히려 고 했다. 해당 서면에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신문사의 노력을 치하하면서도 기사와 사진 설명이 기대한 만큼 진지한 태도로 다루지 않았다는 의견이 포함 되어 있었다.

문제 제기에 대한 신문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문제의 핵심은 기사의 내용이나, 신문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청인은 학교에서 사이버 왕따가 일어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이 부정확하게 작성되어 학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Hereworth의 재학생들이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마치 재학생들이 이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강요한 것처럼 사진 설명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다.

논의내용

Hereworth의 재학생이 Facebook에서 일어난 사이버 왕따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언론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학교 소식지는 학생들이 단지 동참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을 뿐, 실제로 왕따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암시하기는 했으나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않았다.

사진의 사진 설명이 해당 사건과 학교와의 연관성을 과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 신문사가 사이버 왕따를 막기 위해 학부모들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후속보도를 하는

방안을 추천한다.

평 결

PC는 기사를 선정적으로 보이도록 할 수 있는 1면 헤드라인을 작성할 신문사의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 사진 설명과 함께 놓고 보면 해당 기사의 제목은 해당 학교의 재학생들이 왕따에 직접 참여했다는 확연한 인상을 준다. 이 부분은 부정확하고 독자의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 신문사는 사진 설명 아래 해당 사건과 학교와의 연관성이 과장된 점이 있다는 경고문을 게재하기로 동의했다. 따라서 신청인 주장 중 기사 제목과 사진 설명의 부정확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인용한다.

Penny Harding과 Sandy Gill 위원은 해당 결정에 반대했다. 이들은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학교 측의 주장을 인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첫째, Facebook과 유튜브 영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학교 교사의 편지에 의하면 사이버상의 행위가 “재학생과 졸업생들”에 의한 것이며, 이 행위가 “사이버 왕따”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 편지는 Hereworth School에 현재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발송되었고, 학교의 온라인 소식지에도 게재되었는데, 여기서 교장은 이 사안이 모든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언론사가 재학생들이 연관된 사건으로 학교에서 사이버 왕따가 있었다는 제목을 게재한 것은 타당한 행위다.

둘째, 학교 측은 기사 제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신문사는 학교의 입장을 다음 호에 게재했다. 후속 기사에서 교장은 재학생들이 왕따 행위를 하도록 강요 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질랜드 사례 2

익명의 독자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독자의견 형식으로 게재하는 것은 그 성격상 내용들이 즉흥적이고 강압적일 수 있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 대상 게시내용은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 할 수 없다.

사건번호 : 2121 JO MILLIS AGAINST
WANAKA SUN

Jo Millis는 「Wanaka Sun」의 TXT Message Board 섹션에 게시된 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신청인은 해당 섹션에 올라오는 메시지 글이 모두 익명의 독자에 의한 것이며, 개인적인 공격 등 공정성과 균형을 잃은 글이 많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신청인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배 경

TXT Message Board 섹션은 「Wanaka Sun」가 최근에 신설한 것으로, 기존의 독자의견란과 나란히 실린다. 이 섹션에 실리는 의견은 대부분 익명의 독자들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들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되는 구어체의 줄임말 등이 자주 사용된다.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 단체들이 공익사업을 홍보할 때 이용되기도 한다.

불만내용

신청인은 이러한 문자 메시지 내용이 품격이 떨어지며 균형을 잃을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신청인은 「Wanaka Sun」 지난 호가 학교 기부에 대해 다루었을 때, 지역의회 의장과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독자들이 보낸 메시지 내용을 예로 들었다. 신청인은 그러한 독

자의견이 왜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신청인은 단순히 익명으로 게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인물들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익명으로 보도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신청인은 이러한 보도가 “공식적인 따돌림”의 일종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사의 답변

Malcolm Frith 편집장은 The Response TXT Board 섹션은 전통적인 독자 의견을 보내지 않는 독자층을 위해 신설된 것이며 매우 인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섹션에는 운영방침 및 욕설과 모욕적인 의견에 대한 경고가 표시되어 있다. 또한 신문사가 통상적인 수준에서 요약하거나 편집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

편집장은 익명성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만약 이름과 주소를 명시해야만 한다면 섹션이 이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해당 섹션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 검토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독자의 의견은 명예훼손적이거나 모욕적이라고 볼 수 없고, 부적절한 의견은 검토한 뒤 보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핸드폰 번호는 모두 기록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부 메시지를 자사 직원이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단호히 부인했다.

논의내용

신청인이 제시한 지역사회 명사들에 대한 비판 의견은 모욕적이거나 공격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PC는 해당 의견들이 불필요한 공격성 내용이라기보다는 다소 비난조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공정성이나 균형을 잃었는지 여부와 관련, 신문사는 기부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과 의장 및 교장의 입장을 지지하는 글을 여러 개 실은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청인의 불만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익명의 독자 의견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PC도 우려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독자 의견과 문자 메시지 의견에 대해 언론사가 취하는 입장이 전혀 다르다. 기존의 독자 의견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보내오는 의견은 보도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문자 메시지 의견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한이 전혀 없다.

이러한 텍스트 의견은 전통적인 독자 의견에 비해 다소 즉흥적이고 강압적인 것들이 많다. 더욱이 자신

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실천강령은 편집자들이 독자의견을 선정하고 다루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독자의견란의 의견은 개인을 공격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신문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PC는 언론사 사이트가 개인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 형태의 의견을 보도하는 것이 소규모 시나 읍에서는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 왕따’로 악화될 수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리가 있으므로 신문사는 이러한 문자 메시지 의견 섹션을 운영하는 데 내재된 위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당 신청은 인용되지는 않았으나, 지면 매체들이 최근 발전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어떻게 이용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사건이라 할 것이다. 